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시 체 해 부 및 보 존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체 해부자 및 해부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사·치과의사가 시체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체 해부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을 정하고,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체 해부자 또는 시체 해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해부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 전후에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관련 경력 4년 이상을 갖추도록 정하며, 그 밖에 의과대학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7. ~ 7. 6., 8. 18. ~ 9. 2.) 결과, 특
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의료인력 교육환경 개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학위(수의학, 의과학,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생물학, 그

밖에 해부 관련 분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치과대학·한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

나. 다음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

-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
- 2) 의과대학등이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

③ 제2항제2호나목1)에 따른 연구경력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학에서 그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우: 100퍼센트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경력의 경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을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의과대학등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라. 사업계획서

마.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바.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

나.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
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제4조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를 “(시
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표 제2호라목”을 “같은 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
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의4제2
항”을 “법 제9조의4제3항”으로,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일부”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일부 제공에”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일부”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7조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체 해부자 및 지도자의 자격 기준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3.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4.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중전의 별표 1)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 관련)”을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등”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가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 행위란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3”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4”로 한다.

가의2.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2	200	300	500
----------------------------------	----------------	-----	-----	-----

별표 2 제2호에 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의2. 법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5	200	30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1) 해부실습실
- 2) 검사실
- 3) 시체실(안치실)
- 4) 시체보관실
- 5) 기록보관실
- 6) 사무실 및 상담실

나. 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

1) 해부실습실

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는 것

나) 내부 벽면은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 냉난방, 조명시설을 갖추는 것

2) 검사실: 교육 목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병리검사 및 정도관리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

3) 시체실(안치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는 것

4) 시체보관실: 교육 목적 제공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보관 중 품질 관리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비와 24시간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갖추는 것

5) 기록보관실: 시체 및 시체의 일부에 대한 수집·보관 및 제공에 관한 기록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가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6) 사무실 및 상담실: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씩 두어야 한다.

가. 책임자: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의사,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정한다.

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취, 처리 및 관리 담당자: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책임자의 지도하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사람

다. 기증자 등의 동의 및 사후 관리, 교육 목적 제공을 위한 상담·연락 등 행정사무를 전담할 인력

비고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각 시설: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 의과대학등 또는 종합병원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각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기준 2등급 이상(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으로서 그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갖춰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u>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u> <u>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u>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u>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u>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u>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제1조(목적) ----- 「<u>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u>」----- ----- ----- -----.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① 「<u>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u>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u> 2. <u>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u>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학위(수의학, 의과학,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생물학, 그 밖에 해부 관련 분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

나. 다음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

2) 의과대학등이나 「의료
법」 제3조의3에 따른 중
합병원(이하 “종합병원”
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
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해
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

③ 제2항제2호나목1)에 따른 연
구경력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학에서 그 대학의 장이 인
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
을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우:
100퍼센트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
임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경력의 경우: 30퍼
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의 범
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환산율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① 의

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
부의 시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
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
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
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
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체 해부의 시행·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
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을 말
한다.

<신 설>

<삭 제>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
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

----- 다음 각
호의 구분-----
---.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

<신 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② -----

----- 구분에 따른 서류 -----
--.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의과대학등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

2.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별표 1에 따른 시설·장
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
은 서류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
록증 또는 협약서

라. 사업계획서

마.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바.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
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
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

나.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
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u>적은 서류</u>
3. 「 <u>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u> 」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u>협약서</u>	<u><삭 제></u>
4. <u>사업계획서</u>	<u><삭 제></u>
5. <u>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u>	<u><삭 제></u>
6. <u>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u>	<u><삭 제></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u>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u>) ① <u>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제4조(<u>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u>) ① <u>법 제9조의4제3항</u>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설·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u>	4. ----- 같은 ----- <u>표 제2호다목과 별표 1의2 제1호나목5)·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u> -----
② <u>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u>	② <u>법 제9조의4제3항</u> ----- -----

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 제3조제4항-----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

-----.

1. ----- 전부 또는 일부-----

2. ----- 전부 또는 일부-----

3.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 전부 또는 일부 제공에 -----
4. -----
----- 전부 또는 일부 -----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2. ~ 4. (생략)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분석

2. (생략)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

---.

1. -----
----- 제3항 -----

2. ~ 4. (현행과 같음)

5. -----
-- 전부 또는 일부 -----

6. (현행과 같음)

② -----

-----.

-----.

1. -----
-- 전부 또는 일부 -----

2. (현행과 같음)

제7조(규제의 재검토) -----

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1. 제2조에 따른 시체 해부자 및 지도자의 자격 기준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 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3.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4.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
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
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1777